

#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(재위탁) 용역 동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 위탁

##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- 「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8조(관리·운영 등)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(의회 동의 등)

### ○ 추진 필요성

- 환경기초시설 내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, 음식물자원화시설, 재활용선별시설, 부대시설) 위·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(2025. 12. 31.)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재위탁 운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.

## 3. 위탁사무 내용

### ○ 소각시설

-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처리, 정리 등
- 소각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
- 환경오염 방지시설(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)의

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- 소각 잔재물(바닥재, 비산재)의 계량 및 처리 관리
- 침출수 및 오·폐수의 처리
- 폐기물의 반입, 처리량 등 통계 보고

○ 음식물자원화시설

-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계량 및 처리, 정리 등
-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전 및 설비 유지관리
- 시설에서 배출되는 협잡물 및 슬러지의 처리
- 수질관리를 위한 방지시설 운영, 계측장비 관리 및 오염도 측정
- 침출수 및 오·폐수의 처리
- 음식물쓰레기 및 생산품(사료) 반입, 처리량 등 통계 보고

○ 재활용선별시설 및 압축시설 등

-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
- 파쇄·압축·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
-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·폐수의 처리
-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, 보관, 계량, 반출
-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
- 재활용선별장 반입, 반출, 처리량 등 통계 보고

○ 부대시설(유니온타워, 관리동, 상부공원, 주변전실, 주차장 등)

- 부대시설 시설 전기, 기계 유지·관리 업무
- 유니온타워 방문 견학 안내 및 홍보
- 건물 청소 및 경비 등
-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·유지관리
- 부대시설 방문객 현황, 상하수도 용수량 등 통계 보고

#### 4. 위탁시설 현황

- 위 치 : 하남시 미사대로 710(신장동, 환경기초시설)
- 시설규모
  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8톤/일 (48톤/일×1기, 스토커식)

- 음식물자원화시설 80톤/일(건조사료화)
- 재활용선별시설 50톤/일(자동, 수선별)
- 폐수처리시설 134.3톤/일(1차 처리)
- 부대시설(관리동, 홍보, 안내, 전망대, 주차장, 물놀이장, 상부공원 등) 일체

## 5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6개월)
  - 「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9조(위탁기간) 3년

## 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원가산정용역실시 : 2025. 2. 5. ~ 2025. 5. 7.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2025년	비 고
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용역	8,047,014 (88명)	인건비 기준

※ 고정비(인건비)는 업체 선정 시 낙찰률이 적용되며, 1년 단위 협약체결  
변동비는 운영업체 선정 후 협약에 의거 계약체결

## 7. 수탁자 선정방식

- 모집 방법 : 제한경쟁 입찰
  - 선정 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  - 입찰 참가 자격
    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·관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
      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24톤/일 이상 운영 실적 보유, 스토커방식)
      - 음식물자원화시설(40톤/일 이상 운영 실적 보유, 건조사료화방식)
      - 재활용선별시설(25톤/일 이상 운영 실적 보유, 자동·수선별)
- ※ 단, 공동도급 시 참여사의 대표사는 소각시설 24톤/일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함

-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공동 도급시 (3개사 이내)
- 선정방법 : 제출된 제안서를 기술평가 80점(정량적 평가 : 20점 + 정성적 평가 : 60점),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

##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
-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하고,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시설로서 민간위탁 용역(재위탁)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9. 향후 추진계획

- 2025. 8월~ 9월 : 계약심사, 입찰공고, 제안평가위원회 구성
- 2025. 10월 : 제안서 접수, 평가 및 운영업체 선정
- 2025. 11월 :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
- 2026. 1월 : 폐기물처리시설 재위탁 개시

## 10. 관련 법령 및 조례 : 덧붙임

## 관련 법령 및 조례

###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(폐기물시설촉진법)

- 제30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

### 2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

- 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 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
  2.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·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3.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
  4.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  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  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### 3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· 운영 조례

**제8조(관리·운영 등)**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의한 한국환경공단
 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
  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
  4.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·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(수탁한 경우도 포함)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폐기물처리시설의 위·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·수탁 운영에 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당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위탁기간)**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### 4 하남시 사무위탁조례

**제3조(적용범위)**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위탁 사무의 기준)**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

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의회 동의 등)**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 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5.1.>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신설 2023.5.1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
2.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능력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

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
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
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